

# 유네스코 자격인정 협약의 진화: ‘동등성’ 중심의 지역 합의에서 ‘실질적인 차이’ 기반의 글로벌 협약으로

제5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 Korea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er)는  
한국 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아 한국의 국가학위정보센터(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 업무를 수행

발행일 2026년 2월

작성 및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

문의 02-3919-3914, 3919

I

들어가는 글

## 1) 고등교육 자격인정 패러다임의 대전환

- 고등교육 자격인정은 한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가 타국에서도 유효한 가치와 효력을 지님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의미함.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 이동이 가속화되고, 초국경교육(Transnational Education, TNE) 등 학습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국가 간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을 연결하는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임.
- 이는 단순히 학위의 형식을 대조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 지속과 노동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글로벌 인재 유동성의 핵심 기제로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과거 20세기 중반의 고등교육 인정 체계는 ‘동등성(Equivalence)’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었음. 이는 외국 학위가 자국의 학위와 교육 연한, 교과 과정, 학점 구조 등에서 수학적·형식적으로 거의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이었음.
-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진 국가 간에 기계적인 ‘동등성’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오히려 인재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이러한 변화는 각국 고등교육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학습자가 취득한 자격(qualification)이 국경을 넘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규범 체계의 정비를 요구하게 되었음.

## 2)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 이에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인정(Recognition)’이라는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의 전환을 모색함.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라는 개념임. 이는 외국 자격의 자국의 자격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학습 성과와 역량이 인정 목적에 부합한다면, ‘실질적인 차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자격인정 동향과 협약의 진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실질적인 차이’의 개념과 적용 원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육 시스템의 형식적 불일치를 이유로 인정을 거부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학습자가 보유한 실질적 역량에 기반하여 국경 간 이동과 학업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자 글로벌 고등교육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기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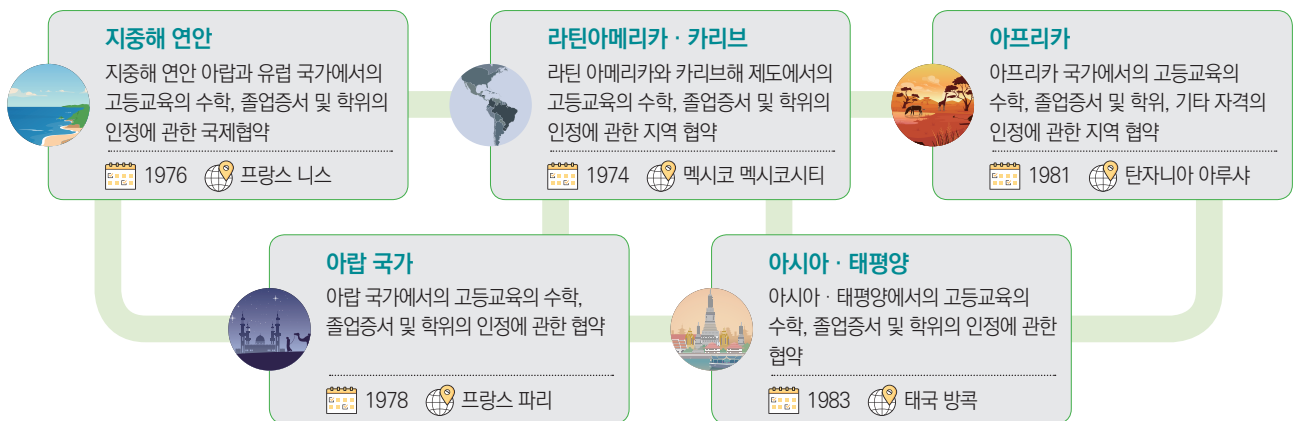
## II

## 유네스코 자격인정 협약의 발전사

자격인정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자격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 고등교육 체계 및 자격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학습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는 크게 3세대에 걸친 유네스코 협약의 발전 과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남.

## 1) 1세대 지역 협약: '동등성(Equivalence)'의 시대 (1970s ~ 1980s)

- 1970년대와 80년대에 체결된 1세대 지역 협약들은 국가 간 지적 연대와 평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창립 이념을 바탕으로 학문적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함. 이 시기의 협약들은 주로 상호 간의 학위와 자격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양자 혹은 다자 간 합의에 초점을 맞춤<sup>1)</sup>.
- 당시 인정 관행은 외국 자격과 자국 자격 간의 상세한 교과 과정 비교에 의존함. 평가자들은 이수 과목의 명칭, 수업 시수, 총 수학 연한 등을 1:1로 대조하여 형식적인 일치 여부를 가림. 이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국가 주도로 엄격하게 관리되던 시기에는 유효할 수 있는 접근이었으나, 교육 시스템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인정을 거부하는 근거로 오용되기도 하였음<sup>2)</sup>.



〈그림 1〉 1970~80년대 유네스코 지역 협약

- 이 시기의 협약들은 '인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원리는 '동등성'에 머물러 있음. 이는 학습자의 역량 보다는 자격증 자체의 형식적 요건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임.
- 영국의 3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가 한국이나 미국의 4년제 시스템으로 진입하려 할 때, 단순히 "1년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학생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인정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재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음.

## 2) 2세대 지역 협약: 리스본 인정 협약과 패러다임의 전환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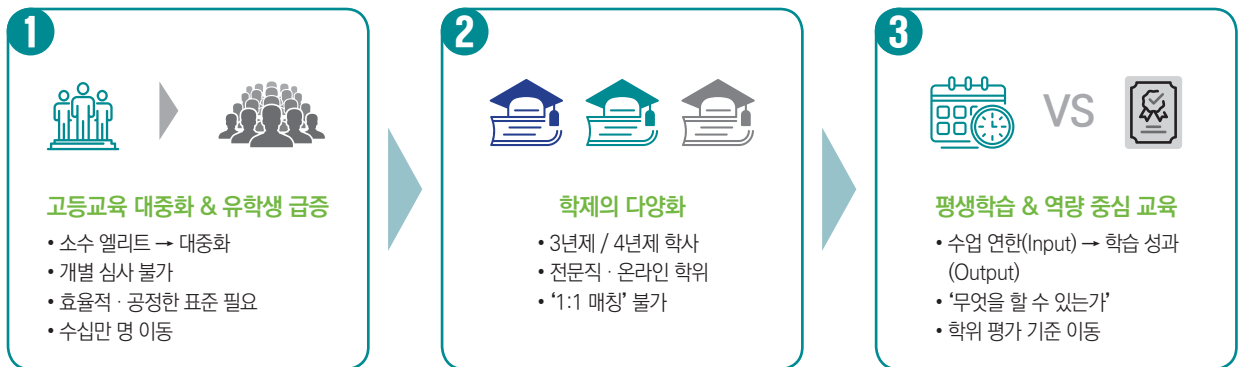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다양화는 기존의 동등성 모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에 1997년, 유네스코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공동으로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리스본 협약)」을 채택<sup>3)</sup>.

1) UNESCO, "Qualifications recognition: a door to collective progress," UNESCO, September 4, 2023

2) Nemethy, A. "Equivalence and recognition: the Prague convention." Higher Education in Europe 15, no. 2 (1990)

3) Council of Europe. (n.d.).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 이 협약은 처음으로 ‘실질적인 차이’라는 개념을 공식 조약에 도입하여, 자격 인정 역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정으로의 이동) 기존의 ‘동등성’이 두 대상의 물리적, 양적 일치 의미를 의미한다면, ‘인정’은 외국 자격이 가진 가치와 효력을 수용국 시스템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함. 즉, “똑같다”가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 (실질적인 차이의 도입) 리스본 협약 제4.1조에서 “자격을 취득한 협약 가입국과 동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협약 가입국 자격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입증 책임의 전환) 외국 자격의 인정을 거부하려는 경우, 그 자격이 자국의 자격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평가 당국(대학 등 인정 주체)으로 넘어감. 즉, ‘동등함’을 증명할 책임이 학생에게 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름’을 증명할 책임이 기관으로 넘어간 것임<sup>4)</sup>.
- 리스본 협약의 성공적인 모델은 이후 다른 지역 협약의 개정을 촉발하였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쿄 협약(2011), 아프리카의 아디스 협약(2014),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약(2019) 등이 리스본 협약의 원칙을 계승하여 2세대 협약으로 재탄생하였음<sup>5)</sup>.
- 도쿄협약은 리스본 협약의 원칙을 아시아적 맥락에 도입하여, 아태지역 내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학위를 인정하고, 국가학위정보센터(NIC)를 설립하여 정보를 교류할 것을 의무화함. 한국은 2017년 도쿄협약을 비준함.



〈그림 2〉 유네스코 협약 변천 주요 사유

### 3) 3세대 글로벌 협약: 전 지구적 이동성을 위한 보편적 규범(2019~)

- 지역 차원의 노력을 넘어, 대륙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유네스코는 2019년 제40차 총회에서 글로벌 협약을 채택함<sup>6)</sup>.
- 이 협약은 2023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준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자격 인정 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 한국은 2025년 5월 글로벌 협약을 비준하며, 글로벌 표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글로벌 협약은 지역 협약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며, 그림과 같은 주요 목표를 가짐.



〈그림 3〉 글로벌 협약 주요 목표

4) ENIC-NARIC Networks, "Introduction (Chapter 10)," European Area of Recognition(EAR) Manual

5) NIC-Japan, "UNESCO's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2026)

6) UNESCO,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 Ⅲ

## 글로벌 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 원칙과 제도적 기반

## 1) 글로벌 협약의 핵심 원칙

- 글로벌 협약은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있어 기존의 형식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 기반의 합리적 판단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원칙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1) **평가받을 권리**: 개인은 취득한 자격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자격을 평가 받을 권리를 가짐. 이는 자격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사전 판단이나 행정 편의적 이유로 평가 절차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심사·검토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함.
  - 2) **공정성과 투명성**: 자격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단순한 내부 기준 보유를 넘어, 신청자가 사전에 판단 기준과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 동일한 자격에 대해 기관·시기·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관행을 지양해야 하며, 평가의 결과는 시기적절하게 통보되어야 함.
  - 3) **정보 기반의 결정**: 자격 인정은 개인의 학위 명칭이나 교육 연한만을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공식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며, 각국의 교육 제도와 질 보장 체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야 함. 개별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학위정보센터(NIC)의 역할이 필수적임.
  - 4) **실질적인 차이의 원칙**: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점. 과거에는 신청자가 외국의 학위가 자신의 것과 동등함을 증명해야 했다면, 글로벌 협약 하에서는 인정 주체가 두 자격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격을 인정해야 함. 입증 책임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전환된 것.

## 2) 협약 가입국의 주요 의무

- 협약은 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입국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 고등교육 진학 자격 및 고등교육 자격의 상호 인정
    - 본 의무는 협약 제4조(고등교육 진학 자격의 인정) 및 제5조(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근거한 사항으로, 협약 가입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이 해당 국가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함.
    - 예컨대, A국가에서 고등교육 입학 자격(고등학교 졸업 등)을 취득한 자는 B국가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고등교육에 접근할 자격을 부여받아야 함.
    - 이는 고등학교 학력 뿐만 아니라, 학사, 석사, 박사 등 고등교육 단계별 자격의 상호 인정을 포함하며, 여기서 '인정'은 해당 학위를 통해 다음 단계의 학업을 지속하거나, 고용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2) 난민 및 피난민의 자격 인정 지원
    - 이는 협약 제7조(난민 및 피난민의 부분학습·자격 인정)에 따른 의무로, 협약 가입국은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박해 등으로 인해 학위를 증명할 서류를 소지하지 못한 난민에 대해서도, 헌법·법률·행정체계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조치'를 통해 그들의 자격을 평가해야 함.
    - 이는 단순한 협약 내 선언이 아니라, '교육 제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임.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입학 전형에서 배제하는 관행은 협약 이행 위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3) 비전통적 학습(Non-traditional education) 및 국경 간 교육(Cross-border education) 인정
    - 협약 제6조(부분학습 및 사전학습의 인정)는 고등교육 과정의 이수 또는 학업 계속을 목적으로,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한 부분학습(partial studies)이나 사전학습(prior learning)에 대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부분학습이란, 학위 취득 이전 단계에서 이수한 일부 교과목, 모듈, 학기 단위의 학습 성과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일부 전공·교양 과목, 교환학생·복수학위 과정 중 취득한 학점, 학위 과정에 포함된 온라인 교과목 이수 실적 등이 이에 해당함. 이는 국내 대학의 편입, 학점 인정, 학업 계속 여부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개념임.
- 사전학습이란 정규 고등교육 과정 이외의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으나,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 성과로 평가 가능한 선행 학습 경험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평가 인정으로 통해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수강한 온라인 강좌(MOOC), 마이크로디그리(Micro-credential) 교육과정 등 고등교육 학습 성과로 전환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 이는 국제화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학위, 마이크로디그리(Micro-credential), 국제 공동학위 등 새로운 형태의 학습 결과물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통적 학습 결과물로서의 학위·학점에 대해 전통적인 학위·학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 4) 국가학위정보센터(NIC)의 설립 및 운영

- 모든 협약 가입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자격에 대한 평가 자문을 수행하는 국가학위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함.
- 국가학위정보센터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자국 고등교육 체계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 제공
  - ② 타국 고등교육 자격 및 기관 정보를 국내 대학에 제공
  - ③ 자격 인정 기준·절차에 대한 자문 제공
  - ④ 타국 인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내 고등교육 기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 대교협은 국제 동향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2017년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KARIC)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 교육부는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KARIC)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공식 지정.
- 국가학위정보센터는 단순한 정보 제공 역할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복잡한 해외 고등교육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객관적 의견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또한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개별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격 인정 판단의 공통 기준이 되는 공신력 있는 정보와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간 인정 절차의 일관성과 전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함.

## IV

###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의 개념

‘실질적인 차이’는 글로벌 협약의 핵심 작동 원리이지만, 협약 본문에서는 해당 용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의하지는 않음. 이는 각국의 다양한 교육 맥락을 존중하고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임. 따라서 우리는 유네스코의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과 유럽의 EAR(European Area of Recognition Manual) 매뉴얼을 참고하여, 개념을 구체화해야 함.

#### 1) 정의와 해석

- 글로벌 협약 운영 지침에서는 ‘실질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sup>7)</sup>.

7) UNESCO,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Operational Guidelines” (2025)

**“외국 자격과 인정이 요청된 협약 가입국의 자격 간의 중대한 차이로서, 지원자가 상급 학업, 연구 활동, 또는 고용 기회와 같은 원하는 활동에서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차이”**

- 위의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1) 목적 지향성: 인정의 평가는 단순히 과거의 학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미래의 활동(예: 석사과정 진학, 취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
  - 2) 성공 가능성: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지원자의 성공을 가로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차이는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함.
  - 3) 입증 책임: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있음.

**2) 자격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 '실질적인 차이'를 체계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EAR 매뉴얼은 자격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며, 평가자는 이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해야 함<sup>8)</sup>.

요소	평가 기준
수준 (Level)	자격이 해당 국가의 교육 체계나 자격 체계(NQF)에서 차지하는 위치
학습량 (Workload)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학점, 연한 등)
질 (Quality)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성 (인가 및 인증 여부)
프로파일 (Profile)	프로그램의 성격(학문 중심, 직업 중심 등)
학습 성과 (Learning Outcomes)	학습자가 과정을 마친 후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

**3) 실질적이지 않은 차이의 예시**

항목	상세 예시
수학 연한의 차이	영국의 3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가 한국의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단순한 수학 연한의 차이보다는 전공 학습량과 도달한 학문적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영국 학제는 교양 과정 없이 즉시 전공 심화 학습을 진행하므로 수학 연한이 짧더라도, 전공 이수 학점 및 학습 성과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의 4년제 학위와 실질적인 차이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전달 방식의 차이	온라인으로 취득한 정규 학위와 대면으로 취득한 정규 학위는 두 과정 모두 적절한 질 보장(Quality Assurance) 체계 하에서 진행되었다면, 전달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인정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음.
논문 유무	일부 국가의 석사 과정이 논문 없이 코스워크나 프로젝트로만 구성된 경우, 학위의 성격과 목적 적합성을 고려해야 함. 해당 과정이 전문 박사(professional doctorate) 등 실무 중심 경로라면 논문 부재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연구 중심 박사 과정 진학 시에는 캡스톤 프로젝트나 별도의 연구 실적 등을 통해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차이 여부를 판단해야 함.

8) ENIC-NARIC Networks, "European Area of Recognition (EAR) Manual" (2014)

## V

##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의 적용 예시

## 1) 예시 1: 3년제 학사 학위와 4년제 시스템

[상황] 영국, 호주, 유럽 등 국가에서 3년제 학사 학위(180 ECTS)를 취득한 학생이 한국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지원함. 한국은 4년제 학사가 표준이므로, “1년의 교육 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학 불허해야 하는지.

- [판단 기준: 학습 성과와 진학 자격] 과거의 ‘동등성’ 패러다임에서는 수학 연한 1년의 부족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였지만, 글로벌 협약 하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함.
  - ① 자국 내 진학 자격: 해당 3년제 학위가 본국에서 정규 석사 과정으로 진학할 자격을 부여하는가?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 학위는 학문적으로 학사(Bachelor)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② 교육과정의 차이: 미국이나 한국의 4년제 학위에는 1년 가량의 교양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국의 3년제는 입학 즉시 전공 심화 학습을 시작함. 따라서, 전공 지식의 총량을 비교하면 3년제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 간 전공 역량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sup>9)</sup>.

## 2) 예시 2: 1년제 석사 학위와 박사 과정 진학

[상황] 영국이나 스페인 등에서 1년제 석사(60~90 ECTS)를 취득한 지원자가 한국의 박사 과정에 지원했지만, 한국의 석사는 통상 2년(4학기)이므로, 연구 역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 [판단 기준: 연구역량] 핵심은 기간이 아닌, 학습 성과임.
  - ① 학위의 성격: 해당 1년제 석사가 수업 중심(Taught Master)인지, 연구 중심(논문을 포함한 Research Master)인지 확인해야 함. 만약 박사 과정이 고도의 연구 커리큘럼을 요구하는데, 지원자의 석사 과정이 논문 작성 없이 수업만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는 박사 과정의 성공적 수행을 저해하는 ‘실질적인 차이’로 간주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수업중심 석사라는 이유만으로 불인정해서는 안 되며, 연구 방법론 모듈 이수 여부 등을 충실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② 유연한 적용: 그러나 1년제 석사 과정도 집중적인 연구 프로젝트나 소논문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원자가 학위 기간 중 연구 방법론을 충분히 이수했거나, 학위 외적으로 연구 실적(논문 게재 등)이 있다면, 1년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인 차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음<sup>10)</sup>.

## 3) 예시 3: 논문 없는 석사

[상황] 미국 등에서 논문 없이 코스웍이나 캡스톤 프로젝트만으로 석사를 취득한 지원자가 있지만, 국내 관행상 석사 학위 논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판단 기준: 목적 적합성] 글로벌 트렌드로 전문 박사(professional doctorate) 등 실무 중심 학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논문의 존재만으로 학위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9) Lantero, L., Finocchietti, C., & Petrucci, E. (2021). Substantial Differences: A glimpse of theory, practice and guidelines. CIMEA.

10) ENIC-NARIC Networks, “Chapter 15: Joint Programmes,” in European Area of Recognition(EAR) Manual

- ① 평가: 지원자가 이수한 캡스톤 프로젝트나 심화 코스워크가 박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연구 기초 역량을 대체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하며, 박사 과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함.
- ② 사례: 실제로 많은 해외 대학들은 논문 없는 석사 소지자에게도 GRE 점수나 별도의 Writing Sample을 통해 연구 잠재력을 입증할 기회를 주고 있음.

## VI

## 나가는 글

### ■ 패러다임의 전환: 동등성에서 포용으로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국제적 흐름은 형식적 기준에 기반한 ‘동등성(Equivalence)’ 모델에서, 학습 성과와 목적 적합성을 중시하는 ‘인정(Recognition)’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왔음. 20세기 중반의 1세대 협약들이 추구했던 동등성 모델에서 나아가 국제사회는 리스본 협약을 기점으로 ‘인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유네스코 글로벌 협약을 통해 전 세계적인 보편 규범으로 확립되었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형식의 일치’를 따지던 과거에서 ‘실질적 역량’을 존중하는 미래로의 근본적인 관점 전환을 의미함. 즉, 고등교육 자격인정을 규제 수단이나, 국경 간 인재 이동과 학습 연계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재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 ‘실질적인 차이’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무게

글로벌 협약의 핵심 원칙인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는 자격 인정의 무게중심을 획기적으로 이동시켰음. 과거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위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정 주체가 자격 간에 목적 달성을 저해할 만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함. 평가자는 수준, 학습량, 질, 프로파일, 학습 성과라는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이가 지원자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가로막을 정도인지 면밀히 판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 ■ ‘실질적인 차이’ 적용 사례가 보여주는 국제 학위인정 방향성

3년제 학사와 4년제 시스템, 1년제 석사와 박사 과정 진학, 논문 없는 석사 학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협약은 형식적 차이를 이유로 한 일괄적 배제를 지양하고 있음. 대신 자격이 본국에서 부여하는 접근 권한, 학습 성과의 실질적 수준, 인정 목적과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함. 이는 고등교육 자격인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된 방향을 분명히 보여줌.

### ■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공통의 해석 기준과 신뢰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학위정보센터(NIC)는 각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자격, 질 보장 제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판단을 지원하고 자격 인정 절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됨.

### ■ 글로벌 학위인정 선도국으로의 도약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학문적 교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유네스코 글로벌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구축될 유연하고 신뢰받는 자격인정 체계는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고등교육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임. 이는 국제 규범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표준 형성과 이행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대학 위기라는 파고 속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유네스코 글로벌 협약 이행을 통해 구축될 유연하고 신뢰받는 자격인정 체계는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의 고등교육 허브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